2027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수행기관 신규 모집 공고

해외로 진출하는 K-콘텐츠 기업 및 개인의 경쟁력 강화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진출(예정) K-콘텐츠 기업·개인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및 저작권 보호에 기여

지원체계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K-콘텐츠 기업·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등

- **(개별대응)** 기업 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 **(공동대응)** 공통된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3개 주체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① 협·단체: 소속 회원사·회원 등 저작권자 3개 주체 이상이 참여하며, 협·단체 소속 담당자를 대표 신청자(간사)로 지정하여 신청

② 협의체: 기업 3개 이상 또는 개인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참여 기업·개인 중 대표 신청자(간사)를 지정하여 신청

※ 협·단체는 참여 저작권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 신청(위임장 제출 필수)
※ 공동대응 협의체의 대표 신청자(간사)는 3자 계약 체결 및 정산 등 행정절차를 총괄

□ 지원방식

○ 신청 기업·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 지원한도

○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 원)

○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 원)

※ 개별·공동대응 모두 참여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 지원유형

○ 개별대응(기업·개인) 및 공동대응(협·단체, 협의체)에 공통 적용하며, 참여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비율)	참여기업·개인 자부담금(비율)	'27년 모집	
바우처 유형	매출액* 규모(최근 3개년 평균)				
기업·개인	'가'형	30억원 이하	95%	5%	'27년 1월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유형으로 신청하되 사업자등록 및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개인 모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비율을 차등 적용함
※ 공동대응(협·단체, 협의체)은 참여자별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평균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 비율을 차등 적용함
※ '27년도에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수행서비스: 세부내용(p.4) 참조

□ 수행기간: 수행기관 지정일로부터 '30. 12. 31.까지

* 지정기간 종료 후 내부심사를 거쳐 수행기간 연장 가능

□ 정산

ㅇ 참여기업·개인이 이용하려는 서비스 금액이 바우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동의를 거쳐 초과금액을 별도 부담

ㅇ 부가가치세는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개인이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

*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개인이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

ㅇ **(정산절차)**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 완료 확인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개인이 서비스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를 등록한 후, 수행기관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요청

* 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호원이 요청하는 서류

서비스 수행 완료 확인 요청	→	서비스 수행 완료 확인	→	만족도 조사 등록	→	정산 요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정산 후 입금
수행기관→참여기업·개인		참여기업·개인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보호원		보호원→수행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및 문체부「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용하여 정산 수행 예정

2. 추진절차

구 분	주체	내용
사업신청	참여기업·개인	·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제출(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심사·선정	보호원	· 1차 요건 검토 · 2차 제안서 심사(사업 운영위원회) 후 선정
서비스 선택 및 협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메뉴판 확인 후 서비스 선택 · (수행기관) 참여기업·개인과 서비스 범위·세부 내용 협의
자부담금 납부	참여기업·개인	· 지원유형별 비율에 따른 자부담금 선납 ※ 자부담금 선납 후 계약(협약) 가능(시스템 처리 상)
계약(협약) 체결	보호원 수행기관 참여기업·개인	· (보호원) 3자 계약(협약) 절차 진행 및 관리 · (수행기관) 표준계약서 기준, 협의된 서비스 내용 및 계약금액 작성 · (참여기업·개인) 보호원 확인 후 계약(협약) 서명 ※ 계약내용(수행인력, 투입률, 투입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호원에 변경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	참여기업·개인	· 수행기관을 통해 계약된 서비스 이용
중간점검	수행기관 보호원	· (수행기관) 계약상 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자료 제출 · (보호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이행현황 및 과업 추진실적 점검 ※ 모니터링·솔루션 분야는 현장점검 병행
서비스 완료	수행기관 참여기업·개인	·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 완료 후 보호원에 확인 요청 · (참여기업·개인) 수행 완료 확인 및 만족도 조사 등록 ·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정산	보호원	· 정산서류 최종 확인 및 회계법인 정산 검토, 수행기관에 정산금액 지급 ※ 정산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성과평가	수행기관 참여기업·개인 보호원	· (수행기관·참여기업·개인) 성과평가회 참석 및 결과 보고 · (보호원) 수행기관별 성과 점검 및 적정성 등 평가 ※ 성과평가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음

※ 참여기업·개인은 공동대응의 협·단체 및 협의체를 포함

3. 신청방법

□ 신청자격

ㅇ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서비스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법인 및 대표자 각각 확인 필요)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법인 4. 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 5.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신청절차

신청 접수('26. 10. 26.~11. 30.)	→	심사('26. 12월~'27. 1월)	→	결과 통보('27. 1월 중)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portal.kcopa.or.kr)'→해외 바우처 지원→모집공고(신청·접수)		서면평가→제안서 심사→승인 여부 결정		개별 통지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26. 11. 30. 23:59 접수 자동 마감(시간 엄수)

□ 신청분야

ㅇ 지원 서비스 분류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지원 상한액
대응전략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유통 시장조사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 경로 등) 조사	30백만원
		불법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해외 현지 불법 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 금액 등), 시장 규모 등 조사	30백만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70백만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불법유통 추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솔루션 등) 도입* **필터링(핑거프린팅),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해시값 추출 등*	10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 대응을 위한 현지 법령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20백만원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수출계약 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 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10백만원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10백만원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60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60백만원
		소송(민·형사, 행정)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비용은 참여기업·개인 부담*	100백만원 (협의체:150*)
		소송 외 대응 (저작권 등록 지원 등)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 조치 및 소송 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60백만원

*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은 소송(민·형사, 행정)에 한함

4. 제출서류 안내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수행기관 신청서	시스템 자동 생성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사업수행 제안서 [별지서식 1]	<참고1, 2, 3> 양식 참조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2]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별지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붙임2> 참조
	사업실적증명서(신청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서명이미지	-
가점서류	사회적기업 인증서	<붙임2> 참조

※ 상기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외 수행기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대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5. 해외 수행기관' 참조

□ 필수서류

○ 수행기관 신청서
- 1개 이상의 수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체크 후 제출
- 전체 직원 수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인원을 기재

○ 사업수행 제안서
- 개조식으로 작성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 검색 시,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기재
- 해당 내용 증빙가능한 경우만 기재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 제출
-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 사업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유사 과제 수행실적에 대한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며, 아래 표 기재 항목을 포함할 것

* 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불가 시 보호원으로 문의 요망

- 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의 경우 QR코드 포함된 사본 제출
- 정부 또는 알리오(ALIO) 공시 대상 공공기관과 수행한 용역 중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처·금액·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구분	기재항목
신청법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수행 기간, 계약 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증명서 발급기관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폐업 사실 증명원 제출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사실 증명(사업자등록변경 내역)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제출용 발급 필수) 제출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
- 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필요)

○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법인 및 대표자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제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증명서 제출)

ㅇ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직원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신청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상근인력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청월 기준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A01 코드의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함

□ 가점서류

ㅇ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발급(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

5. 해외 수행기관

□ 신청자격

ㅇ 한국인이거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이 소속된 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 국내에 본사를 둔 법인의 해외 지사 또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지사가 있는 법인
- 국내 대리인(변호사 등)과 업무협력 관계 및 수행경험이 있는 해외 대리인이 소속된 법인
- 한국저작권보호원(태국·필리핀·베트남)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의 해외사무소와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 타 기관의 유사 바우처 사업 수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검증받은 법인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업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증빙기준

ㅇ 국내 수행기관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해외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증빙서류의 적격성 검토

- (제출) 평가항목별 심사가 가능한 현지 증빙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 사업자등록, 수행실적, 재무현황 및 인력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원어본 및 한국어 번역본(기업 날인 필수)을 모두 제출하며, 현지 사정에 따른 대체서류는 보호원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 결정

6. 수행기관 선정

□ 심사방법

ㅇ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격성 심사(Pass/Fail 방식)

-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점 5점을 적용하며, 가점을 포함한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 선정(절대평가)

ㅇ (1차) 보호원 내부 검토 및 정량평가, (2차) 사업 운영위원회 정성평가 및 선정 심의(서면)

* 필요시 회의 참석을 통한 설명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심사절차

내부 검토 및 정량평가 (한국저작권보호원) (~'26. 12월)	→	적격성 평가 및 선정 심의 (사업 운영위원회) ('27. 1월 중)	→	평가결과 통보 (한국저작권보호원) ('27. 1월 중)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선정 여부 심의·의결		선정기준 충족 시 수행기관 등록

□ 결과통보

ㅇ 선정 결과는 개별 이메일 발송

7.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관련)** 제출된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보호원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수행기관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수행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참여 제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수행기관 및 참여업체 간 담합행위, 허위비용 청구
- 허위로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세·지방세 납입)**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수행계획 및 인력 변경)** 수행계획 또는 수행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전 서비스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보호원은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성과를 홍보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보호원은 사업 종료 후에도 서비스 수행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련 자료 제출 및 결과 확인 등에 협조해야 함

○ **(바우처 서비스 제공 범위)** 국내 활동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송 서비스의 성공보수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정보 제공)** 관계 법령에 따라 국회·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 수행 관련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

○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 자료의 제출 또는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가 정산 시 불인정되거나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당거래, 부정신청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형사고발,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8.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02-3153-2459

○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붙임 1 선정심사 기준

구분(정량)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업체역량 (10)	신용평가 등급	o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 불필요 (최고점 부여)	5
	관련분야 업력	o 관련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의 경과년수 -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5
수행역량 (10)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o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의 합 - 사업실적증명서	5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o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의 합 - 사업실적증명서	5
안정성 (10)	매출액	o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홈택스 발급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
	조직규모	o 인력 규모 (상근인력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정부정책 부합성 (가점)	사회적 기업인증	o 사회적기업 참여 우대지원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여부(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출)	+5

구분(정성)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수행 적정성 (70)	전문성	o 저작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강점	20
	사업 이해도	o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분야 이해도	15
	제안내용 충실성	o 지원사업 수행 제안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15
	수행역량 및 수행전략	o 수행역량 종합평가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략의 우수성	20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가이드

평가항목		서류명	발급기관	발급방법	기타사항
필수 서류		사업수행 제안서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1~2] 참조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정보회사 (㈜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해당 기관의 신청절차를 통해 발급	* 신용정보회사별 발급 비용 및 소요기간이 상이하며, 평가자료 제출 후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추가 비용 지불 시 급행 발급 가능)
	관련분야 업력	사업자 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금액	사업실적 증명서	각 해당 기관	-	
	매출액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3개년 발급
	인력규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상근인력만 인정
	체납여부 확인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납부내역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www.gov.kr)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가점 서류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발급기관별 상이, 별도문의	* 해당시 제출

*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참고 1 사업수행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수행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요 제목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기관 현황

○ 주요 연혁(실적)

-

*

○ 수행인력 소개

-

*

2. 서비스 영역 및 수행 계획

○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 기재

-

*

○ 서비스 항목별 수행 계획을 기재

-

*

3. (신청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수행 관련 인적, 물적 자원 및 사업수행 노하우 등을 기재

-

*

참고 2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2호 서식)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사 업 명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2					
3					
4					
5					
계	0건		00원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메뉴판과 관련된 것만 기재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사업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참고 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당사(본인)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할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대표 전화번호 등)를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 게시 등	탈퇴 시 까지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제공·조회의 목적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회사: ㈜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사업 사후관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년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기업(신용)정보**(신용등급, 매출액 및 국세 등 체납 현황 • **기타신용정보**(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정보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탈퇴 시 까지 보유·이용 다만, 귀하의 신청이 보호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함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위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참고 4 수행기관 신청서 예시(별도 제출 불필요)

접수번호	2026000000000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수행기관)

수행기관	기업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자등록번호	872-82-00115	
	대표자명	김바로	종업원수('24년)	200	
	대표전화	0231532459	홈페이지	https://www.kcopa.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설립일	2026-10-26	
실무책임자	성 명	김실무	소속(부서)	해외사업부	
	직 위	팀장	유선전화	0231532459	
	휴대전화	010-0000-0000	이메일	cvoucher@kcopa.or.kr	

	구분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수행 서비스 구분 *(중복 가능)*	대응전략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 조사	☐ 합법 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 저작권 보호기술도입 지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침해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대응 지원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소송 외 대응
기타 정보 *(해당시 제출)*	사회적 기업		☐ 해당 / ✔ 비해당

관계 법령과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실무책임자)의 메일링, SMS 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법 인 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대 표 자 : 김바로 김바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